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1138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유동균

(더불어민주당, 마포구 제3선거구, 도시계획관리위원회)

□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선배.동료 위원 여러분!
유동균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□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현재 재정비촉지지구내 기존 시가지로 유지·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, 필요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
이 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는,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제4항 각호의 사항(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)을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